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

농림수산식품부

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1일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.

1. 제정이유

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법률 제11357호, 2012. 2. 22. 공포, 2013. 2. 23. 시행)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계열화사업자가 사육경비를 기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가산이자 의 이율을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(연6분)로 정함(안 제2조)
- 나.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(참조: 축산경영과장, 전화: 02-500-2064, 팩스: 02-507-2667, e-mail: kskoo@korea.kr)에게 제출하면 된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나. 성명, 전화번호 및 주소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, 대표자 성명, 전화번호 및 주소)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가산이자 지급) 「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5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”이라 함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.

제3조(시정권고 및 시정명령) 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법 위반내용
2. 권고사항

3. 시정시한

4. 수락 여부 통지기한

5. 수락 거부시의 조치

6. 수락 또는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수락하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.

1. 법 위반내용

2. 시정사항

3. 시정시한

4. 시정명령 거부시의 조치

제4조(과태료의 부과 기준)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과태료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 1)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: 100분의 100
- 2)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: 100분의 90
- 3)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: 100분의 80
- 4)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: 100분의 70
- 5)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: 100분의 60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·교부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1호	100	200	400
나.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2호	200	400	800
다.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3호	500	1,000	2,000
라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4호	500	1,000	2,000
마.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·교부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6조 제2항	30	60	120
바.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	법 제36조 제2항	60	120	240
사. 법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6조 제2항	150	300	600
아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	법 제36조 제2항	150	300	600